

서울특별시 마포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0. 17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. 10. 6. 안미자 의원 외 11인

나. 회부일자 : 2023. 10. 10.

다. 상정일자 :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(2023. 10. 17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오옥자

가. 제안이유

준비된 죽음, 아름다운 죽음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웰다잉(Well-Dying) 문화의 조성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나. 주요내용

- (1)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(2)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(3).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(4).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(5).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
3. 검토의견 [신준호 전문위원]

가. 조례 개정 배경

- 본 제정조례안은 빠른 고령화에 따라 사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어 이제는 잘 사는 것을 넘어 바람직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최근 「연명의료결정법」이 개정되어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대두되고 있음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제정 조례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7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으로 목적을 밝히고 있고 “웰다잉 문화 조성”의 정의와 기타 필요한 용어는 「연명의료결정법」에서 사용하는 것을 차용하였음.
-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·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“웰다잉 문화조성” 교육 및 홍보활동의 추진 근거와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제7조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중 취득한 정보의 비밀유지 준수 의무를 규정함.

다. 종합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에서 “준비된 죽음“이란 한 사람이나 가족에 대해 의료 전문가와 협력하여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준

비하는 과정을 나타냄.

- 이러한 결정과 준비 과정은 죽음과 관련된 의료 선택, 종교적이거나 종교적이지 않은 의식, 장례 및 장례식의 세부사항에 대한 고려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할 것임.
- 본 제정 조례안은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할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「인명의료결정법」이 마련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“주민복지에 관한 사업” 범주에 포함되어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업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.
- 상위법령에서는 인명의료결정과 관련 호스피스 등의 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국가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그 범위를 넘나들지 않는 차원에서 자치사무로 정한다면 조례 제정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.
- 다만, 준비된 죽음은 각 개인과 가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적인 측면과 의료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정책 추진시 의료 및 법률 전문가와의 조언을 얻는 등 종합적인 검토로 추진해야 하겠음.
- 아울러, 「인명의료결정법」 제11조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등록기관 지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음.

[관 계 법 령]

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 <약칭 : 연명의료결정법>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·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